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-2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2년 8월 16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김영기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중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동 개정조례안중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려는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 개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되어 동 개정조례안중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하고자 함.

(안 제6조, 제7조)

1)공장설립 승인

2)농지관련 인·허가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(농지전용허가, 변경허가 및 협의·허가·신고지 사후관리)

3)산림훼손관련 인·허가 업무처리(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)

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중 9·12·20호와 제7조제2항중 12·13·14호를 현행대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(총무국)1 (생략)	제5조(총무국)① (현행과 같음)	제5조(총무국)1 (개정안과 같음)
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-----	②-----
1-13. (생략)	1-13. (현행과 같음)	1-13. (개정안과 같음)
14. 병무행정 종합관리	14. (삭제)	14. 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사회산업국)1 (생략)	제6조(사회산업국)① (현행과 같음)	제6조(사회산업국)1 (개정안과 같음)
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.	②-----	②-----
1-8. (생략)	1-8. (현행과 같음)	1-8. (개정안과 같음)
9. (삭제)	9. 공장설립 승인	9. (현행과 같음)
10-11. (생략)	10-11. (현행과 같음)	10-11. (개정안과 같음)
12. 농지관리(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, 농지전용협의, 허가·신고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제외한다)	12. 농지관리	12. (현행과 같음)
13-19. (생략)	13-19. (현행과 같음)	13-19. (개정안과 같음)
20. 조림 및 유림사업(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위무를 제외한다)	20. 조림 및 유림사업	20. (현행과 같음)
21. (생략)	21. (현행과 같음)	21.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건설국)① (생략)	제7조(건설국)① (현행과 같음)	제7조(건설국)1 (개정안과 같음)
②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-----	②-----
1-11. (생략)	1-11. (현행과 같음)	1-11. (개정안과 같음)
12. 공장설립 승인	12. (삭제)	12. (현행과 같음)
13. 농지관리 인·허가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(농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, 농지전용협의, 허가·신고지 사후관리)	13. (삭제)	13. (현행과 같음)
14. 산림훼손관리 인·허가 업무처리(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신고)	14. (삭제)	14. (현행과 같음)
15-20. (생략)	12-17. (현행 제15호 내지 제20호와 같음)	12-17. (개정안과 같음)